

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300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300622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12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0. 23.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12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답 2,02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6. 16. 접수 제34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세진

판사김래니

판사정세영